

# 이웃종교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 천주교회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CBCK) 소개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송용민 신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국장)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 1. 가톨릭교회(천주교) 소개

### 1) ‘가톨릭교’ - 용어에 대한 이해

① 가톨릭 대사전: ‘일반적, 보편적’이란 뜻의 그리스어 ‘katholikos’에서 유래된 말이다. 교부시대에는 ‘보편적, 공변된’이란 뜻으로 가톨릭 섭리, 가톨릭 부활이라 했는데, 이냐시오(Ignatius)가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라고 쓴 이래 이 용어가 널리 승인되어 니체아 신경(信經)에서 “하나요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전래된 교회”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공변된, 보편적’이란 성 빈첸시오(St. Vincentius Lerinensis)가 지적했듯이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믿어 온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이 마땅히 타당해야 했으므로 이단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신앙의 정통성을 의미하는 말로, 즉 정통한 신앙을 전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또 사도로부터 전래되었다는 의미에서 개신교와 구별되는 로마 교황청

중심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 이 교회에 소속된 신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천주교가 전래된 이래 서학(西學), 천주학(天主學), 천주교(天主教), 카톨릭교 등으로 혼용되어 오다가 주교회의에서 ‘천주교 또는 가톨릭교’를 선택 공인하여 《가톨릭 지도서》(Directorium, 1932년 간행)에 규정함으로써 공식명칭이 되었다.

② 원불교 대사전: “가톨릭교회를 줄여서 사용하는 말로 한자문화권에서는 천주교라고 함. 정통 교의를 신봉하는 그리스도교.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로마가톨릭과 독립한 그리스정교로 대별되나, 일반적으로 로마가톨릭을 일컫는 말로 쓰임.” (원불교대사전)

## 2) 천주교(天主教) 용어에 대한 이해

① “천주(天主)를 믿는 종교라는 뜻으로, 가톨릭을 이르는 말. 우리가 천주교(天主教)라고도 부르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가톨릭을 전해 받은 중국에서 하느님을 천주(天主)로 불렀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편 ‘천주교회’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더욱 부각할 때 함께 쓰는 말이다.” (가톨릭 용어집)

## 3) 가톨릭교회(천주교) 조직 구조

조직명	개념, 위상
교황청	세계 가톨릭의 최상위기관. 로마 교회, 바티칸이라고도 한다. ⇒ 교황
주교회의	지역(국가, 교구 단위) 교회 주교들이 공통의 사안을 논의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교황청과 연락, 교류를 수행하는 회의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총회는 연 2회(춘계, 추계) 개최된다. ⇒ 주교단

관구	인접한 교구들의 상호관계 강화를 위해 결합한 교회구역. 국내에는 서울/대구/광주 관구가 있으며, 대교구장 대주교가 해당 관구장을 맡는다. ⇒ 대주교
교구 (지역교회)	지역단위로 구분된 교회 행정구역. 국내에는 16개 교구가 있다. ⇒ 주교
본당	지역에 있는 성당들을 이르는 교회법상의 명칭. ⇒ 신부
공소	신부가 상주하지 않고 순회하며 사목하는 구역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신자들의 모임장소. 오늘날 공소는 사제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많이 있으며, 공소 신자들 중에 회장을 선출하거나 선교사를 파견하여 신앙 예식, 교리교육, 신자들의 모임 등을 주재한다.
구역, 반	본당 신자들을 가까운 거주 지역별로 묶은 단위

#### 4) 한국 천주교회 현황 (2014년 12월 31일 현재)

신자 수: 5,560,971명

총인구 대비 비율: 10.6%

본당(신부가 상주하는 성당) 수: 1,682개

성직자 수: 4,984명

(주교 36, 한국인 신부 4,786, 외국인 신부 162)

수도자 수: 남녀 합산 168개 수도회 11,734명

남자) 47개 수도회 1,574명

여자) 121개 수도회 10,160명

#### 5) 해외선교, 교포사목 현황 (2014년 12월 31일 현재)

진출 국가 수: 75개국

해외선교 파견 신부 수: 216명

해외선교 수도자 수(수사신부 제외): 762명

해외 선교사 수: 978명

해외교포 한인 신자 수: 156,924명



## 6) 천주교 언론·출판 매체

경향잡지 <http://zine.cbck.or.kr>

가톨릭신문 <http://www.catholictimes.org>

가톨릭출판사 <http://www.catholicbook.kr>

평화방송·평화신문 <http://www.pbc.co.kr>

바오로딸 <http://www.pauline.or.kr>

분도출판사 <http://www.bundobook.co.kr>

생활성서사 <http://www.biblelife.co.kr>

성바오로 <http://www.paolo.net>

성서와함께 <http://www.liwibi.com>

## 2.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CBCK) 소개

### 1)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한국 교회 전체의 공동선이 증진되도록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조정,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좌의 승인 아래 설립된 **한국 고위 성직계의 회합**이다(한국 주교회의 정관 제1조; 교회법 제447조, 제449조 참조). 주교회의는 국내 16개 천주교 교구의 협의체로서 대내적, 대외적으로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주교회의 회원은 국내 16개 교구의 주교들로 구성된다.

### 2) 주교회의란

① 주교회의는 교회의 다양한 공동 관심사들에 대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수단으로서 특수한 사목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교회의는 영구적인 상설 기구의 성격을 지녔으며 1889년 8월 24일에 발표된 주

교성성의 훈령은 이 회의들을 명시적으로 “주교회의”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②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는 이들 기구의 유용성과 잠재력을 인정하였으며,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국가나 지역의 주교들이 한 회합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지혜와 경험의 빛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힘을 합치는 거룩한 결속을 이루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주교회의는 대체로 국가적이다. 문화와 전통, 역사가 같은 동일한 국가의 주교들만이 모인다. 그렇지만 “더 적거나 더 큰 범위의 지역을 위하여 즉 특정 지역에 설정된 소수의 개별 교회의 주교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개별 교회들의 주교들을 포함하는 주교회의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교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 3) 주교회의 임무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 땅의 복음화와 공통 유익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국가와 시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도직 형태와 방법을 창작하여,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 협의하며 교령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한다. 또한 필요한 때마다 사도좌(교황청)에 문제의 공동 해결을 청원하고, 사도좌의 교령이나 결정을 시행하며, 그 밖에 보편 교회와 한국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할 것들이나 사도좌에서 요청한 것들을 다룬다(한국 주교회의 정관 제2조 참조).

### 4)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회원 (2015년 5월 20일 현재)

의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광주대교구장)

부의장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청주교구장)

서기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인천교구장)

회원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서울대교구장/ 평양교구장 서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대구대교구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제주교구장)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전주교구장)  
김지석 야고보 주교(원주교구장)  
이기현 베드로 주교(의정부교구장)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마산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안동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춘천교구장/ 함흥교구장 서리)  
이용훈 마티아 주교(수원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대전교구장)  
황철수 바오로 주교(부산교구장)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군종교구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서울대교구 보좌 주교)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대전교구 보좌 주교)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인천교구 보좌 주교)  
손삼석 요셉 주교(부산교구 보좌 주교)  
이성효 리노 주교(수원교구 보좌 주교)  
옥현진 시몬 주교(광주대교구 보좌 주교)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서울대교구 보좌 주교)  
정순택 베드로 주교(서울대교구 보좌 주교)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

## 5)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기구

### ① 주교회의 총회: 주교회의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 춘계 총회는 사순 제3주간(3월 중순)에, 추계 총회는 10월 제2주일 다

음 주간에 열린다.

- 교리적 선언이 유권적 가르침을 이루고 주교회의의 이름으로 발표되려면, 총회에서 회원 주교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하거나, 의결 투표권을 가진 주교들 가운데 적어도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성좌(교황)의 승인을 받은 뒤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총회를 준비하고 총회 결정사항들의 집행을 실시하며, 주교회의 산하 기구의 활동과 공적 발언을 심의하는 회의체

- 상임위원회는 주교회의 의장과 부의장, 주교회의 서기, 총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되며 2개월마다 회의를 갖는다.

③ 주교위원회: 주교회의 총회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교회 각 분야의 제반 문제를 연구 심의하며 산하 기구를 지도 감독하는 기구

- 주교회의는 상설 기구로 성직주교위원회, 교리주교위원회, 선교사목주교위원회, 사회주교위원회 등 4개 주교위원회를 두고 있다.
- 주교회의 총회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교위원회는 교회 각 분야의 제반 문제를 연구 심의하며, 그 산하 기구를 지도 감독한다. 주교회의 총회는 주교위원회에 특정 문제의 연구를 위촉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며, 주교위원회가 제출한 의안과 건의를 심의 결정한다. 주교위원회는 담당 주교를 선정하여 소관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나, 전국위원회나 산하 기구 등을 집단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공동 책임을 갖는다.
- 주교위원회 위원은 주교회의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안배하며, 적어도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는다. 주교위원회는 전임 총무를 두고, 전문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주교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주교회의 총회에 상정된 의안을 관련 분야별로 배정하여 깊이 있게 심의하는 것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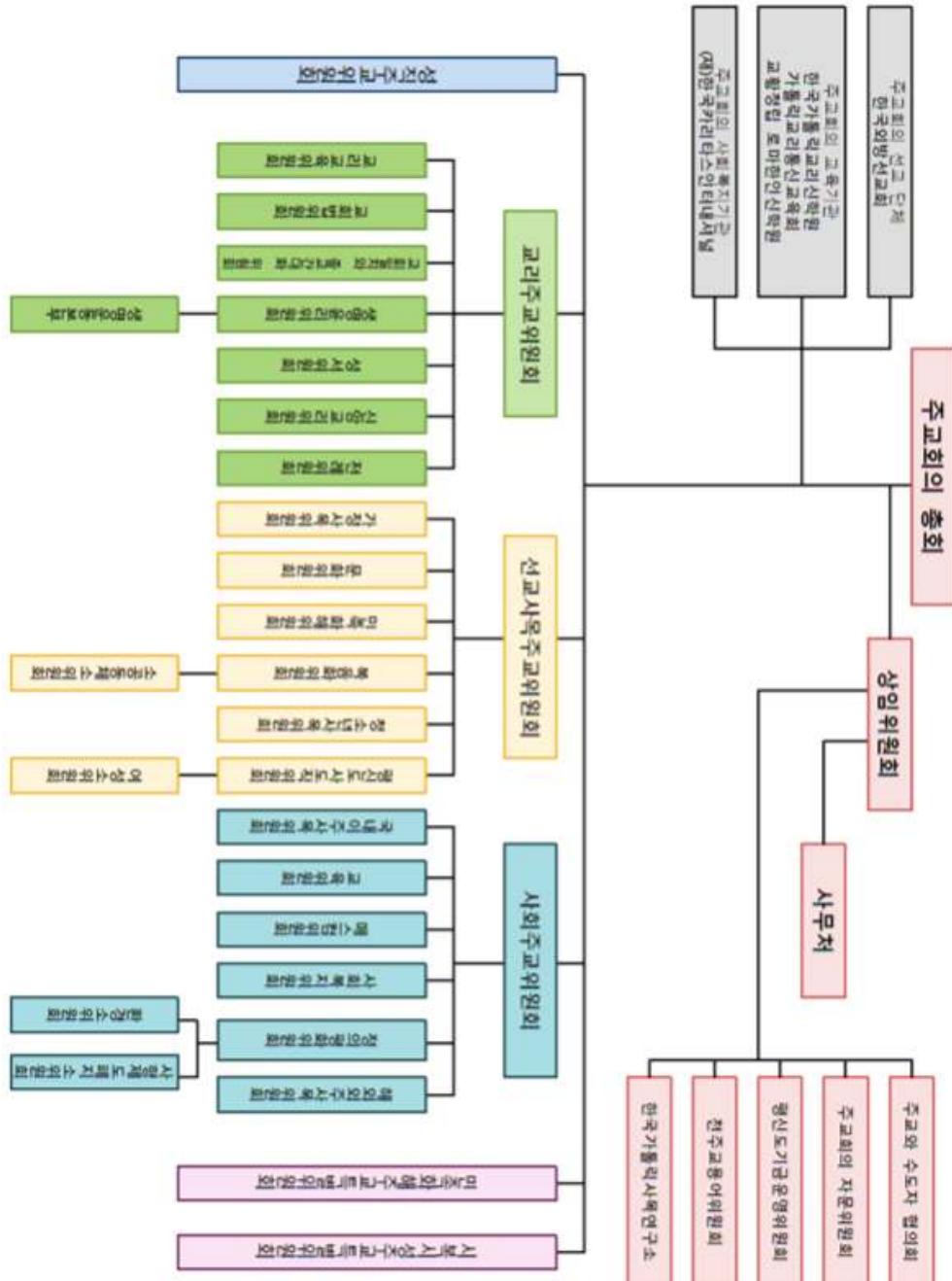
- 특별 사안에 따라서는 주교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 한국 주교회의는 2000년 대회년과 제삼천년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2000년 대회년 주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1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주교특별위원회로는 1997년에 북한 선교, 민족 화해 등의 문제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설립한 '민족화해 주교특별위원회', 2001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우리 순교자와 증거자 가운데 아직 시성되지 않은 분들의 시복시성 통합 추진을 위하여 설립을 결의한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안명옥 주교)가 있다.

#### ④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 주교회의는 필요에 따라 주교를 위원장(또는 담당 주교)으로 하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위원으로 하는 전국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전국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제반 문제를 연구, 보고하며, 주교회의 총회 또는 주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실행하고, 관련 분야 사도직 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를 모색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현재 한국 주교회의는 20개 위원회, 4개 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 원 회 명	위 원 장	총 무
천주교용어위원회(상임위 직속)	강우일 베드로 주교	안소근 실비아 수녀
가정사목위원회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송현 로마노 신부
교리교육위원회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이무연 레지나 수녀
교육위원회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김웅태 요셉 신부
교회법위원회	황철수 바오로 주교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신정훈 미카엘 신부
국내이주사목위원회 (다문화. 국내성지)	옥현진 시몬 주교	허윤진 안드레아 신부
매스컴위원회(언론, 대중문화)	유경촌 티모태오 주교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
문화위원회(문화재, 교회미술)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	이영춘 세례자 요한 신부
민족화해위원회(통일)	이기현 베드로 주교	이은형 티모태오 신부
복음화위원회 -소공동체소위원회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김지영 사무엘 신부 노주현 비비안나
사회복지위원회	김운희 루카 주교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이용훈 마티아 주교 이성효 리노 주교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 송열섭 가시미로 신부
성서위원회	손삼석 요셉 주교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번역) 전영준 바오로 신부(사도직)
신앙교리위원회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박준양 세례자 요한 신부
전례위원회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장신호 요한 보스코 신부
정의평화위원회(정치, 사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유흥식 라자로 주교	김유정 유스티노 신부 김형태 변호사 양기석 스테파노 신부
청소년사목위원회	정순택 베드로 주교	박진홍 요셉 신부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민병덕 비오 신부 박은미 헬레나 교수
해외이주사목위원회(해외선교)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	박규흠 베네딕토 신부

## 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기구 조직도



### 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atholic Conference of Korea: CCK) 소개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전국 차원의 문서 전교 등을 위하여 중앙출판사의 기능을 하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설립하기로 결정, 1952년 1월 11일 당시 문교부(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 2) 목적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한국 천주교회의 유기적인 활동을 위한 협의 기구로서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며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사업

- 한국 천주교회의 선교 사목 활동의 정보 교환과 유대 강화
- 성경과 전례서, 교리서와 교황청 문서등 출판. 기관지 발행
- 교회 관련 서적과 교회가 인정하는 홍보물 보급
- 국내외 가톨릭 신자들의 교류 촉진
- 국내외 긴급 구호 활동과 가톨릭 사회 복지 사업 지원

#### 4) 구성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회원은 한국 내 각 교구의 교구장(또는 대리)으로 한다. 총회에서 선출된 임기 3년의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3인,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

#### 5) 운영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총회가 있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업무를 위해 사무처와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총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더 연임될 수 있다. 사무처에 국장 약간 명을 임기 3년으로 임용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현재는 사무국장, 관리국장, 홍보국장이 활동하고 있다.

### [참고자료 1] - 전세계 추기경과 주교들의 회의체

**추기경 회의 Consistory (of Cardinals):** 추기경들은 합의체(추기경 회의)를 통해 교황을 보필한다. 추기경단의 모든 회합은 반드시 교황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17세기 이후 추기경회의는 새 추기경의 서임 때만 교황이 소집하는 형식적인 회합이었으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추기경 회의를 활성화했다. 그는 1991년에 추기경 전체회의를 소집해 인간 생명 수호와 종교적 분파 문제에 대해, 1994년에는 2000년 대회년 준비에 대해 추기경들의 자문을 받았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 추기경 서임식에 맞추어 추기경회의를 소집, 현대의 가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례 추기경 회의는 모든 추기경들 또는 적어도 로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추기경들이 자주 일어나는 중대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매우 장엄한 행위를 위해 소집되며, 교회의 특별한 필요나 더욱 중대한 사안들을 다룰 목적으로 거행되는 특별 추기경 회의에는 모든 추기경들이 소집된다.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Synod of Bishops:**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세계 주교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공의회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1965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설립된 상설 기구. 교황과 주교의 유대 도모, 신앙과 도덕 유지, 교회의 규율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교황에게 자문하며, 세상에서의 교회 행동에 관한 문제들을 숙고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선발되어 정해진 시기에 함께 모이는 주교들의 회합. 3~4년마다 열

리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최근 주교 시노드의 주제는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2012년 10월, 제13차 정기총회), ‘가정사목과 복음화’(2014년 10월, 제3차 임시총회),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의 가정의 소명과 사명’(2015년 10월 예정, 제14차 정기총회) 등이다.

### [천주교 이해를 위한 핵심 용어]

#### 1. 가톨릭, 천주교 개념

- **가톨릭 교회 Catholic Church** 가톨릭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를 ‘보편 교회’라고 하고 각 지역(교구)의 가톨릭 교회를 ‘지역 교회’ 또는 ‘개별 교회’라고 한다. 가톨릭 교회 안에도 로마 전례와는 구분되는 동방 전례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방 가톨릭 교회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성공회, 프로테스탄트(개신교) 등은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회)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 **동방 가톨릭 교회 Eastern Catholic Churches** 고대 동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자리한 모든 교회를 동방 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은 현재까지 각 지역교회마다 고유하게 전승된 비잔틴 전례(슬라브 교회, 러시아 교회 등), 아르메니아 전례, 서시리아 전례(시리아 교회, 시로 말란카르 교회, 마론파 교회), 동시리아 전례(칼데아 교회, 시로 말라바르 교회), 콥트 전례, 에티오피아 전례를 보존하여 사용하고 있다. 1054년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지역 교회 수장들이 로마 주교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교 대분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로마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는 개별 지역 교회들과 수도원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세계 여러 지역에 전파된 개별 동방 교회들은 여전히 가톨릭 교회와 친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동방 가톨릭 교회라고 한다. 1950년에 시로 말라바르 교회 전체가 가톨릭 교회와 친교를 회복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많은 동방 교회가 로마 교회와 친교를 회복하고 가톨릭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부터 전승된 것으로 여겨지는 고유의 전통과 전례를 가지고 있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들의 전통과 관습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로마 교황청 내에 이 교회들을 관할하는 부서인 동방교회성(Congregatio pro Ecclesiis Orientalibus)을 설립하였고(1917), 이들을 위한 고유의 동방교회법(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을 제정하였으며(1990), 현재까지도 이들의 신학과 전례, 영성 연구를 위하여 교황청 동방 대학(Pontificium Institutum Orientalium)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 2. 교황청, 바티칸 기구

- **교황 Supreme Pontiff, Pope, Holy Father** 세계 가톨릭의 본산인 로마 교구의 교구장이며 바티칸 시국의 원수.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전 세계 가톨릭의 영도자이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세계 주교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교종(敎宗)이라고 하기도 한다.
- **교황청 Roman Curia**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가톨릭 교회 행정의 중앙 기관. 때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국가인 바티칸 시국을 뜻하기도 한다. 바티칸은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로마의 한 언덕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지금은 그곳에 베드로 성전이 자리 잡고 있고, 교황이 거처하고 집무한다. 교황청에는 현재 국무원과 9개 성, 법원, 12개 평의회, 각종 위원회, 특수 업무

기구 등이 있다.

- **사도좌 Apostolic See, Holy See**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주교좌. 전 세계 그리스도교에 대한 법률적, 사목적 최고 권위를 가진 교황의 직위를 말한다. 사용 문맥에 따라 성좌(聖座, Sedes Sancta, Holy See), 교황청(教皇廳, Curia Romana)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모두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 **콘클라베 conclave**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 ‘열쇠로 잠근다’는 뜻으로, 외부와 차단된 교황 선거 장소를 뜻한다. 교황은 추기경단이 선출하며, 콘클라베는 교황이 서거한 뒤 15일(필요에 따라 사흘은 더 연장 가능) 안에 열게 되어 있다. 오늘날 추기경들이 교황 선거를 위해 외부와 차단되는 장소는 바티칸 내의 시스티나 성당이다. 선거 방법은 비밀 투표이고 투표는 오전 오후 두 차례 실시하며, 3분의 2의 다수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이때 외부 접촉은 모두 차단되고, 촬영이나 녹음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교황청 고문서실에 보관된다. 투표 용지를 태운 연기로 선거 결과를 알리는데, 지붕 위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면 미결, 흰 연기가 나면 새 교황이 탄생했다는 뜻이다.
- **교황 대사 Apostolic Nuncio** 국제법상의 대사(ambassador)로서 주재국 정부와 교황청의 친교를 두텁게 하는 한편, 고정적으로 교황을 대표하여 사도좌와 개별 교회 사이의 일치와 유대를 견고하게 하는 사명을 지닌 성직자.
- **사도좌 정기 방문 Ad Limina (visit)** 교회법(399조 1항)에 따라 한 국가(또는 주교회의를 매개로 연합된 복수 국가)의 모든 교구의 주교들이 5년마다 사도좌(교황청)를 공식 방문하는 일. 주교회의를 통해 단체로 이뤄지며, 일정은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묘소 참배와 무덤 제대 미사 ▲그룹별 교황 알현(면담) ▲교황과 함께하는 미사와 공동 알현 ▲교황청 부서 방문으로 구성된다. 라틴어 명칭인 ‘අ එම්නා(Ad Limina Apostolorum)’는

‘사도들의 무덤으로’라는 뜻이다. 사도(使徒)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세계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과 일치를 확인하는 공식 방문이 ‘앗 리미나’다.

-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Synod of Bishops* 지역교회의 사목자인 주교들이 교회의 중대사에 대해 숙고하며 교황에게 자문할 목적으로 소집되는 회합. 교황은 필요에 따라 주교대의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주제를 정하고 대의원들을 선임할 수 있다. 3~4년마다 정기총회를 갖지만, 교회 안에서 중대하고 신속한 결정이 요구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도 한다. (교회법 제342-348조 참조)
- **교도권** *magisterium* 교황을 비롯한 주교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가르치는 권한을 가리키는 말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도 한다.
- **성(省) Congregation** 교회 생활의 중요한 영역(예: 전례, 성사, 성직자, 시성 관련)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바티칸 교황청의 부서. 현재 교황청에 설치된 성은 신앙교리성, 동방교회성, 경신성사성, 시성성, 주교성, 인류복음화성, 성직자성,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약칭 수도회성), 가톨릭교육성(신학교와 교육기관 성) 등 9개다.

### 3. 교회 조직, 교회법

- **교회법** *canon law* 자연법, 성경과 성전에 계시된 하느님의 실정법, 교회가 제정한 법률 등,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를 규정하고 신자 생활을 규율하고자 하느님과 교회가 제정한 법과 규범의 총체.
- **교회 법원** *Tribunals*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소송 절차를 교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기구.

### 4. 성직자 품계, 직능

- 성직자 **clergy** 성품성사를 받아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 하느님의 신비를 나누어 주도록 축성된 사람.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은 주교(추기경, 교황 포함)와 그들의 협력자인 신부, 부제를 가리킨다.
- 추기경 **cardinal** 가톨릭 교계 제도에서 교황 다음가는 성직자. 교황 선거권을 행사하며, 교황청의 각 성(省)과 기구의 장관이나 위원장 등의 주요 직책을 맡는다. 교황을 의장으로 하는 추기경 회의(consistorium)를 구성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대주교, 2006년 정진석 대주교, 2014년 염수정 대주교가 추기경에 서임되었다.
- 교황 선출권을 가진 만 80세 미만 추기경단 인원은 최대 120명, 80세 이상 추기경까지 합산한 인원은 200여 명이다. 추기경단 인원은 매년 초에 발표되는 추기경 임명, 추기경들의 연령 또는 선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 대주교 **archbishop** 주로 대교구를 관할하는 주교. 교황청에 근무하는 주교나 교황 사절 등에게도 대주교 칭호가 주어진다.
- 주교 **bishop**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후계자. 신부들 중에서 발탁되어 주교품을 받은 고위 성직자로서, 교황이 임명한다.
- 교구장 주교 **diocesan bishop** 주교 중에서도 교구를 사목할 책임을 맡은 이로 임명된 주교. 교구장은 교구의 대표자로서 교구 내의 모든 이를 대상으로 사목 활동을 하며, 세계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세계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부교구장 주교 **coadjutor bishop** 교구장 계승권이 있는 주교. 교구의 전반적 사목에 교구장을 보필하며,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즉시 교구장 주교가 된다. 교구장과 마찬가지로 관할 교구 내에 상주할 의무가 있다.
- 보좌 주교 **auxiliary bishop**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여 교구의 사목 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도록 교황이 임명한 명의 주교. 교구장 계승권이 있는 부

교구장 주교(coadjutor bishop)와 달리 교구장 계승권은 없다. 명의 주교로서 보좌 주교는 관할 구역 내에서 주교품급에 주어진 사항을 집행할 수 있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교황청 또는 교구장 주교에게 위임받은 권한만을 갖는다.

- **명의 주교 titular bishop** 주교로 서품되었으나 특정 교구를 교구장으로 책임지지 않는 주교. 그가 대주교일 때는 명의 대주교라 부른다. 교황청 각 부서의 직책에 종사하는 주교, 보좌 주교 등이 명의 주교로 임명된다.
- **신부 Father** 사제품을 받은 성직자.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베풀어 주며, 아버지처럼 신자들의 영혼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때문이다.
- **서품 ordination** 교회 안에서 주교가 합당한 후보자에게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을 수여하는 일. 서품식은 성직자 품계에 따라 주교 서품식, 사제 서품식, 부제 서품식으로 구분된다. 서품 받는 일을 ‘수품’이라 한다.
- **총대리 vicar general** 교구 행정 업무에서 교구장을 보필할 임무를 맡기고자 교구장이 임의로 임명한 신부나 주교를 이르는 말이다. 교구에 보좌 주교가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좌 주교가 총대리를 맡는다.
- **몬시뇰 Monsignor (Msgr)** 주교품을 받지 않은 가톨릭 고위 성직자에 대한 경칭. ‘나의 주님’이란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이 칭호는 아비뇽 체류 시대에 프랑스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은 재치권을 행사할 교구를 갖지 않는 교황청 고위 성직자와, 덕망 높은 성직자가 교황에게 몬시뇰 칭호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 **부제 deacon** 성품성사의 세 품계(주교품, 사제품, 부제품) 중 가장 낮은 품계의 가톨릭 성직자. 주교의 협력자이며 사제를 도와 세례 및 혼인 성사를 집전하고 강론, 장례 예절, 성체 분배 등을 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사제직을 준비하는 일시적 부제뿐 아니라 초대 교회의 임무를 염두에 둔 종신 부제 제도를 두기 시작했다.

- **신학교 seminary** 성직자 양성을 위해 교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 마련한 특별한 형태의 대학 교육 기관. 한국에는 1855년 충북 제천 배론에 최초의 신학교인 ‘성 요셉 신학당’이 세워졌으나 1866년 병인박해로 폐교되었다. 그 뒤 1885년 강원도 원주 부엉골에 오늘의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의 전신인 ‘예수 성심 신학교’가 설립되었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해 광주, 대구, 수원, 부산, 대전, 인천의 7개 대신학교가 사제 양성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5. 수도자, 평신도

- **수도자 monk, religious** 교회법으로 설립된 특정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정결, 청빈, 순명의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공적으로 선서함으로써 그 수도회에 합체되고 수도회 소속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자(교회법 제607조). 지원기와 청원기를 마치고 공적으로 첫 서원을 하면 수도자가 되며, 남자는 수사, 여자는 수녀라 한다.
- **수도회 religious order** 회헌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의 단체. 승인된 회헌이나 회칙에 따라 사는 공적 수도 서원을 한 회원으로 구성되며 교황청이나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성원에 따라 남자 수도회와 여자 수도회(수녀회), 성직 수도회와 평수사회, 설립 주체에 따라 교황청 설립 수도회와 교구 설립 수도회로 구분된다.
- **수사 monk, brother** 남자 수도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도 서원을 하고 수도회 규칙(회헌)과 수도회 장상(長上)의 명에 따라 생활한다. 수사가 성품성사를 받으면 성직 수사(또는 수도 사제, 수사 신부), 그렇지 않으면 평수사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 **수도 사제 religious priest, regular priest** 수도회에 입회한 수도자로서 사제 양성 교육을 받고 사제품을 받은 이, 또는 사제로서 수도회에 입회

하고 수도 서약을 함으로써 그 수도회에 정식 입적된 회원. 수도 사제는 수도자 신분과 사제 신분을 함께 지닌 성직자로서 교구 사제, 재속 사제와 구분하여 ‘성직 수사’, ‘수사 신부’라고도 한다.

- **수녀 nun, (religious) sister** 여자 수도자.
- **서원 vow** (주로 수도자가) 그리스도교적 완덕을 쌓고자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느님께 드리는 약속. 서원은 심사숙고한 다음 자유 의지에 따라 해야 하며, 서원을 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 **독신 생활 celibacy**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교회에 봉사하고자 자유의지에 따라 혼인하지 않고 홀로 사는 생활. 성직자들은 하늘나라를 위해 평생 완전한 정결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교회법 제277조). 수도자들도 독신 생활의 완전한 정결을 서원한다.
- **복음적 권리(복음 삼덕):** 수도자가 서원 때 약속하는 3대 덕목. 정결 chastity / 청빈 poverty / 순명 obedience
- **평신도 laity, layman**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평신도를 ‘듣고 따르는 교회’(ecclesia discens et oboediens)라 하여 수동성을 강조했으나, 공의회를 계기로 평신도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당시 공의회는 평신도의 특수 사명을 인정하고 평신도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평신도는 사회의 누룩으로서 세상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11월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낸다.
- **환속 secularization, laicization** 성직자나 수도자가 자신의 교회법적 권리와 의무를 영구 상실하고 평신도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

## 6. 가톨릭 예식, 교리, 문화

- **전례 liturgy**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 교회가 성경이나 성전(聖傳)에 의거해 정식 공인한 의식으로, 미사와 성사 및 준성사, 성무일도(시간 전례), 성체 행렬, 성체 강복 예절 등도 전례에 포함된다. 전례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인 교회 공동체의 예식이며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행위다. 전례를 통해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흡수함으로써 영혼의 성화(聖化)와 구원을 누리게 된다.
- **미사 Ma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재현하고 성체성사를 이루는 가톨릭 교회의 제사. 미사는 크게 하느님 말씀을 듣고 찬미하는 ‘말씀 전례’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며 예수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시는 ‘성찬 전례’로 구성된다.
- 미사의 구조는 본 문서 마지막 쪽 참조.
- **성사 Sacrament**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룩한 표지 또는 예식. 성사의 은총으로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하느님을 공경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가톨릭 교회의 성사에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 등 일곱 가지가 있다.
- **삼위일체 Trinity** 천주교 4대 교리의 하나. 성부(하느님), 성자(예수님), 성령 삼위(三位)가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뜻으로, 세 위격(位格, persona)이 완전히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한 신성(神性)을 이룬다는 뜻이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스도교의 구원 진리를 요약한 개념이다.
- **고해성사 Sacrament of Penance, sacramental confession** 가톨릭 교회의 일곱 성사 가운데 하나.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가 세례 이후 지은 죄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받으며 교회와 화해하게 하는 성사이다. 죄를 통회하

고 고백한 신자는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 죄 사함(사죄)의 은총을 입고 사제가 정해 준 보속을 이행함으로써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하게 된다. 고해성사는 신자와 고해 사제의 일대일 만남을 통한 개별 고백만 가능하며, 직접 대면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대리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죄 고백은 고해성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사 indulgence** 교회가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잠벌을 면해주는 것.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어도 죄에 따른 벌, 곧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는다. 잠벌은 소죄나 보속할 죄벌이 남아 있는 사람이 현세나 내세의 연옥에서 받게 되는 잠시적 벌.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 즉 ‘영벌(永罰, damnatio)’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잠벌을 전부 없애 주는 것을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e plenariae), 일부를 없애 주는 것을 부분 대사(部分大赦, indulgentiae partiales)라 한다. 대사는 죄 자체를 사면하는 효력은 없으며, 가톨릭교회에서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수단은 고해성사뿐이다. 그러므로 일반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면죄부’라는 용어는 잘못된 번역이며, ‘대사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전대사 plenary indulgence** 죄의 유한한 벌인 잠벌을 모두 사면하는 일.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피정 retreat** 피세정념(避世靜念) 또는 피속추정(避俗追靜)의 준말로, 가톨릭 신자들이 영성 생활에 필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죄신을 위해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 묵상과 성찰 기도 등 종교적 수련을 하는 일. 피정 장소로 성당이나 수도원, 피정의 집 등을 이용한다. 성직자와 수도자는 연 1회 이상 의무로 피정을 하며, 평신도들도 사순시기나 연말연시, 휴가 기간을 이용해 피정을 한다.